

근저당권 설정등기 준비 서류

대상자	서류명
소유자 (근저당권설정자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등기권리증 (분실한 경우 확인서면 작성)2. 주민등록초본 (주소변동사항 포함) 1통.3. 인감증명서 1통.4. 인감도장5. 신분증 <p>※ 관공서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일 것.</p>
근저당권자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주민등록초본 1통.2. 도장3. 신분증 <p>※ 관공서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일 것.</p>

인본합동법무사 이병찬사무소

서울 강남구 논현로 425, 4층 401호 (역삼동, 마이다스빌딩)

Tel. 02-2285-3800 Fax. 02-6280-3811

e-mail : bc3579@hanmail.net 홈페이지 : <https://naturelaw.kr>

계좌 : 신한은행 110-200-528493 이병찬법무사